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지권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406
----------	------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3일

발 의 자 : 정지권 의원(1명)

찬 성 자 : 이은주, 이승미, 김인호, 정진술,
강동길, 추승우, 김태호, 이현찬,
김상훈 의원(9명)

1. 제안이유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세계보건기구 WHO에 서는 전염병 정보 단계중 최고 위험 등급인 펜더믹을 선언하였음. 이는 ‘감염병 세계 유행’이라고도 함.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앞으로도 최장 2년이나 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고 현재까지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임. 감염 증상시에는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되며 양성으로 판단시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되는 심각한 감염병임. 이에따라 서울시는 이러한 감염병으로부터 대중교통 운전원 및 관제사 등 운행에 필요한 주요 인원들의 감염시 대중교통이 멈추는 상황일 발생치 않도록 사전 계획하고 준비하여야 함. 추가적으로 대중교통 운전원들에 대한 근무 투입전 음주 측정을 내실화하여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원천 차단하고자 제안하였음.

2. 주요골자

- 가. 시장은 감염병 발생시 대중교통이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평소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
- 나. 시민들의 책무에 전염병 예방과 전염병 발생시 확산·차단을 위한 시책을 따르게 하기 위한 근거 마련
- 다. 대중교통 운전원들의 근무 투입전 음주측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음주측정 전산시스템을 구축토록하여 실질적으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항의 11. 감염병 발생시 대중교통 운영 계획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④ 모든 시민은 전염병 예방 및 확산·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전원 근무 투입전 음주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음주 측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②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항 1 ~ 10 (현행과 같음) <신설> ①항 11. 감염병 발생시 대중교통 운영 계획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 ③ (생략)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모든 시민은 전염병 예방 및 확산·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 ② (생략)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전원 근무 투입전 음주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음주 측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시 대중교통 운영 계획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제3조제1항제11호) 신설로 시장의 대중교통 운영 계획 시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비용추계가 곤란
 - * 단, 금번 개정에 따른 시민의 권리와 의무(제4조제4항) 신설 및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제5조제3항)는 서울시 재정 지출의 순증가나 재정 수입의 순감소는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안 시장의 책무(제3조제1항제11호)에 의해, 감염병 발생시 대중교통 운영 계획 시행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시장의 책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 석 관 이수아

☎ 02-2180-7944

e-mail : sua8873@seoul.go.kr